

조합원의 약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제약관의 구성과
주요용어에 대한 설명, 조합원 유의사항 등을 요약하여 설명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공제약관 개요

제1편 공제약관의 구성

제2편 가입대상 및 주요용어에 대한 설명

제3편 조합원 유의사항

제4편 사고 발생 시 우선 조치사항



제1편 공제약관의 구성

보통약관

사고 시 보상내용 + 자동차공제계약의 성립, 청약철회 등 권리와 의무를 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

-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 : 타인 상해 및 사망사고
- 대물배상 : 타인 차량 및 재물 파손
- 자기신체사고 : 운전자 본인, 가족의 상해 및 사망
- 자기차량손해 : 자신의 차량 파손 및 도난

□ 공제계약의 성립, 청약철회 등 권리와 의무를 정한 내용

- 일반사항 : 공제계약의 성립, 청약철회, 조합원의 의무사항, 공제금 계산방법 등
- 기타사항 : 공제계약의 소멸과 승계, 분담금 환급 및 공제금의 분담
- 공제금지급 기준 :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의 지급기준과 과실상계 등

※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등 상세한 내용은 본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약관

분담금 납입방법과 결제수단을 선택하거나 도서지역에서 운행하는 공제계약자동차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편 가입대상 및 주요용어에 대한 설명

가입대상

공제규정 제6조 제①항^{제10}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전세버스 자동차

(1) 공제규정 제6조(공제가입 및 계약) 제①항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주요용어에 대한 설명

- **공제가액** :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제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 공제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
- **공제가입금액** :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조합이 지급하는 공제금의 한도액(보상한도액)
- **공제금** : 자동차 사고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공제조합이 조합원 또는 공제금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
- **분담금** : 공제계약 내용에 따라 조합원이 지불하는 금액
-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운전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면허 정지 중 혹은 운전금지 중 운전하는 것을 포함
- **면책** : 특정한 사안(예 : 조합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



□ 분할분담금 납입을 잊지 마세요. 꼭! 알아둡시다.



청약서에 기재된 분할분담금 납입기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분할분담금이 기한 내에 납입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분할분담금이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으면 '분할분담금 납입최고 안내장'을 보내드립니다. 만일, 분할분담금이 납입최고기간 말일까지 납입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기 시 유의사항

□ 공제계약 만기(종료)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자동차공제(의무공제포함)를 가입한 차량의 공제계약이 만기(종료)될 경우 만기일 이전 2회에 걸쳐 조합원에게 만기사실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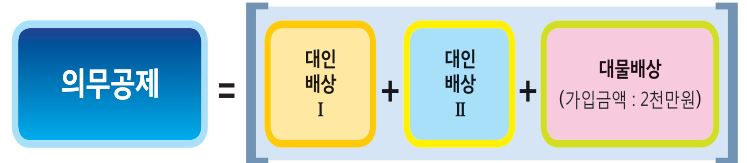
구 분	안내시기	안내방법	안내내용
1차 안내	만기일 75일 ~30일 전	우편발송	만기일자
2차 안내	만기일 30일 ~10일 전	우편발송	재계약일자
3차 안내	만기일 5일 전	핸드폰 문자서비스	만기일자

※ 공제기간이 1개월 이내인 '단기계약'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의무공제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제도로써 공제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사항입니다.



계약변경사항

공제기간 중 계약사항을 변경하려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반드시 알려주셔야 하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조합원께 발송되는 각종 안내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차구입 및 교체

교체된 새로운 자동차로 계약변경을 하셔야 교체된 자동차의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4편 사고 발생 시 우선 조치사항

사고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적절한 대처요령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점을 이전하거나 영업소를 개설하는 경우

본점을 이전하거나营业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합에 가입을 하여야 공제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운행지역(도서지역→육지)을 변경하는 경우

운행지역이 「도서지역→육지」 또는 「육지→도서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분담금의 변동이 발생되므로 반드시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 꼭 알아둡시다!

- 위의 변경내용 외에도 다른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변경내용을 알려주시지 않을 경우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변경내용에 따라 분담금의 추가 청구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여기로 알려주세요!

자동차공제약관 맨 뒤 지부 연락처를 참조하여 관할지역 지부로 변경하실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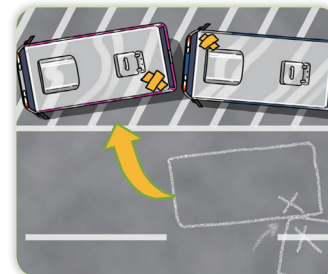


01 부상자 구호

-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확인
- 부상상태 확인 후 부상이 심할 경우 병원후송

02 정황증거 확보

- 사고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촬영 (핸드폰, 카메라 등)
- 사고장소, 차량위치 등을 도로상에 표시 (스프레이, 페인트 등)
- 목격자 확보 (인적사항, 연락처)



03 안전한 장소로 사고차량 이동

- 정황증거 확보 후 교통상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해 가까운 길 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고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킨다.



04 필요한 긴급조치 후 경찰서 신고

-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05 공제조합에 통보

- 사고접수 대표번호 1588 - 3080
- 가까운 지부로 연락
(맨 뒤 지부 연락처 참조)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공제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조합원과 공제조합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자동차공제 약관의 본문 내용입니다.

보 통 약 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공제의 구성

제2편 자동차공제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3편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4편 일반사항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공제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17
제2조(자동차공제의 구성)	21

제2편 자동차공제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 I	
제3조(보상하는 손해)	23
제4조(조합원)	23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3
제2절 대인배상 II 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24
제7조(조합원)	24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4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조합원 개별적용)	26
제10조(지급공제금의 계산)	26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27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29
제13조(조합원)	29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9
제15조(공제금의 종류와 한도)	30
제16조(지급공제금의 계산)	30
제2절 자기차량손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31
제18조(조합원)	32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2
제20조(지급공제금의 계산)	34

제3편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조합원의 공제금 청구

제21조(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37
제22조(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37
제23조(제출서류)	39
제24조(가지급금의 지급)	40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5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41
제26조(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41
제27조(제출서류)	42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43

제3장 공제금의 분담 등

제29조(공제금의 분담)	44
제30조(공제조합의 대위)	44
제31조(공제조합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45
제32조(합의 등의 협조 · 대행)	45
제33조(공탁금의 대출)	46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가입대상 및 공제계약의 성립

제34조(가입대상)	47
제35조(공제계약의 성립)	47
제36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48
제37조(공제 안내자료의 효력)	48
제38조(공제기간)	49
제39조(사고발생지역)	49

제2장 청약철회 및 거부

제40조(청약철회)	50
제41조(청약거부)	50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 공제의 구성

■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하“공제조합”이라고 함)이 조합원에 대한 보상 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조합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 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조합원자동차가 아니면서 조합원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조합원이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공제계약이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가 없는 자동차

나. 공제계약이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3장 조합원 등의 의무사항

제42조(계약 전 알릴의무)	51
제43조(계약 후 알릴의무)	51
제44조(사고발생시 의무)	52
제45조(손실보전 의무)	53

제4장 공제계약의 변동, 해지 및 분담금의 환급

제46조(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	54
제47조(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	54
제48조(공제계약의 취소)	55
제49조(공제계약의 효력상실)	55
제50조(조합원의 공제계약 해지 · 해제)	56
제51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57
제52조(적용분담금의 계산)	58
제53조(분담금의 환급 등)	59

제5장 그 밖의 사항

제54조(약관의 해석)	61
제55조(개인정보 이용 및 공제계약 정보의 제공)	61
제56조(공제계약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61
제57조(자부담금의 납입)	62
제58조(추가분담금의 납입)	62
제59조(분할분담금의 납입)	62
제60조(미납입분담금의 공제)	62
제61조(분쟁의 조정)	62
제62조(분담금의 할인 · 할증율)	63
제63조(관할법원)	63
제64조(준용규정)	63

<별 표>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	64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78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82
〈별표 4〉 과실상계 등	83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84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85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103

다. 공제계약이나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가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조합원에 적용되는 공제계약 또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¹⁾ 또는 장비⁽²⁾ 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³⁾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¹⁾ 하거나 장비⁽²⁾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 (1)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2)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 (3)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하이패스 단말기)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제45조(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 · 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공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제를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과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조합원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조합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조합원 :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자 중에서 자동차공제계약청약서(이하 “공제계약청약서”라 함.)의 조합원란에 기재된 조합원을 말합니다. 만약, 기명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조합원으로 봅니다.

나. 친족조합원 : 기명조합원과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조합원 : 기명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조합원 : 기명조합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조합원의 사용자에게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조합원 : 다른 조합원(기명조합원, 친족조합원, 승낙조합원, 사용조합원을 말함)을 위하여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공제계약자동차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조합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조합원의 부모 : 조합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조합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조합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¹⁾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²⁾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8. 공제가액

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제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공제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19. 대체폐차

대체폐차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신자동차로 대체등록을 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신자동차로 대체 등록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 등록하는 것으로서 차종 및 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대체된 경우를 말합니다.

▣ 제2조(자동차공제의 구성)

①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자동차공제는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5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공제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공제에 가입합니다.

1. 의무공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의해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공제 : 의무공제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의무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공제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편 자동차공제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 I

■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 I」에서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에 의한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제4조(조합원)

「대인배상 I」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 I」의 조합원으로 봅니다.

1. 기명조합원
2. 친족조합원
3. 승낙조합원
4. 사용조합원
5. 운전조합원

■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조합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대인배상 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나.「대인배상 I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I」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자기신체사고」	조합원이 자동차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자기차량손해」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이 약관에서 조합원이란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제7조(조합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조합원
2. 친족조합원
3. 승낙조합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조합원
5. 운전조합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명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조합원 이외의 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조합원이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7. 공제계약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조합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기명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공제계약자동차가 조합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조합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2. 조합원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조합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공제계약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손해를 보상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이 제9조(조합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조합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제9조(조합원 개별적용)

-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조합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7호를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정하는 공제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 제10조(지급공제금의 계산)

-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공제조합은 이 약관의 '공제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공제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text{지급공제금} = \text{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¹⁾에 따라 조합원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 + \text{비용} - \text{공제액}$$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¹⁾에 따라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자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공제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 II」: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공제계약자동차가 「대인배상 I」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① 조합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조합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공제계약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공제조합이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또는 「대물배상」에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 I」: 1사고당 음주운전 1,000만원, 무면허운전 3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300만원
 2. 「대인배상 II」: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공제가입금액 이하 손해 : 1사고당 음주운전 500만원, 무면허운전 100만원,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100만원

제1절 자기신체사고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공제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 ② 조합원은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공제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경제적 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공제조합은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조합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3조(조합원)

- ① 「자기신체사고」에서 조합원은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조합원)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조합원. 다만, 제7조 제1호의 기명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조합원으로 봅니다.
 2. 제7조(조합원)의 조합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② 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조합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조합원에 대한 공제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손해가 공제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공제계약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조합원이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위치에 탑승 중 생긴 손해

■ 제15조(공제금의 종류와 한도)

공제조합이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공제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조합원이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사망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조합원이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3〉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 금액표'상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조합원이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3〉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 금액표'에 따라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후유장애 공제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라. 다만, '나'목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사망공제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후유장애 공제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공제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2. 공제조합이 사망공제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공제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공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자인 기명조합원의 대표자 등이 본인의 사망공제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공제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제16조(지급공제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공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공제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공제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	-------	---	----	---	-----

가. 실제손해액은 〈별표 1〉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1) 자동차공제(보험계약 포함)대인배상 I (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 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제2절 자기차량손해

■ 제17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에서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공제계약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¹⁾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²⁾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공제계약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공제계약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공제계약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실제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5. 경미한 손상⁽³⁾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 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1)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이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 (2)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공제계약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 (3)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 제18조(조합원)

「자기차량손해」에서 조합원은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기명조합원을 말합니다.

■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8. 공제계약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9.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0. 공제계약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2. 공제계약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공제계약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¹⁾로 인한 손해

-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공제계약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조합원 및 기명조합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¹⁾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 가. 기명조합원
 -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공제계약자동차를 빌린 임차인⁽²⁾
 - 다. 기명조합원과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1) '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0조(지급공제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공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공제조합은 이 약관의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text{지급공제금} = \text{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text{비용} - \text{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2. 위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공제가입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가.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입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제가입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나. 공제계약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다. 공제계약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라. 공제계약자동차가 제함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조합이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위 '자기부담금'은 공제계약자동차에 전부손해⁽¹⁾가 생긴 경우 또는 공제조합이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공제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1) '전부손해'라 함은 공제계약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공제조합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공제가입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5.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서 공제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6. 공제조합이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공제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공제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공제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7.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공제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입액보다 적을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의 공제가입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이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가 공제조합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3편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조합원의 공제금 청구

■ 제21조(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조합원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 「자기신체사고」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3.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공제계약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공제금을 청구하였으나 공제계약차량이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 및 공제계약차량의 반환여부는 조합원의 의사에 따릅니다.

■ 제22조(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조합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공제조합이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④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조합원의 공제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⑥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에서 공제조합은 조합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3조(제출 서류)

조합원은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제금 청구시 필요서류 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1. 공제금 청구서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7. 조합원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II 또는 보험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8. 전손공제금을 청구 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 사실증명서			○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		○	○	
전손사고 후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		○	○	
9. 그 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제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24조(가치급금의 지급)

- ① 조합원이 가치급금을 청구한 경우 공제조합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치급금(자동차공제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공제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공제조합은 가치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치급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치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공제조합이 가치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가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치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공제조합은 이 약관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조합원에게 지급한 가치급금은 장래 지급될 공제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공제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조합원이 가치급금을 청구할 때는 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3조(제출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5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조합원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공제조합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제26조(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 ①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공제조합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조합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공제조합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

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⑦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제27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서류 등	대인배상 I · II	대물배상
1. 손해배상청구서(공제금지급청구서)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3.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
4. 그 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제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 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공제조합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2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공제조합이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 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9조(공제금의 분담)

「대인배상 I ·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금을 분담합니다.

1. 이 공제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공제계약(보험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 다른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조합(보험회사 포함)에 가입된 자동차 공제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공제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공제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공제계약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공제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공제금을 각 조합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공제계약(보험계약 포함)에서 공제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제30조(공제조합의 대위)

- ① 공제조합이 조합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공제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조합

원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공제조합은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 다만, 공제금을 「별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공제계약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 ③ 조합원은 공제조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1조(공제조합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① 공제조합은 이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② 공제조합이 공제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조합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32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 ①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조합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가입대상 및 공제계약의 성립

■ 제34조(가입대상)

“공제규정 제6조(공제가입 및 계약) 제①항”⁽¹⁾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전세버스 자동차

(1) ‘공제규정 제6조(공제가입 및 계약)’

①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제35조(공제계약의 성립)

- ① 이 공제계약은 조합원이 청약을 하고 공제조합이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 ② 조합원이 청약을 할 때 ‘제1회 분담금’(분담금을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분담금 전액’(분담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분담금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경우에는, 조합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공제조합이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 없이 공제계약청약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제1회 분담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공제계약이 성립하면 공제조합은 ‘제38조(공제기간)’의 규정에 따라 공제기간의 첫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조합원으로부터 제1회 분담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승낙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조합원을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은)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공제조합이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공제조합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공제조합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 제33조(공탁금의 대출)

공제조합이 제32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조합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조합원은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공제조합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제36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조합원에게 공제약관 및 조합원용 공제계약청약서 부분을 교부하고 공제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약관이나 조합원용 공제계약청약서(청약서 부분)를 fax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공제는 제외합니다.
 - 가. 조합원이 청약을 했을 때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약관 및 조합원 보관용 공제계약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지 않은 경우
 - 나. 조합원이 청약을 했을 때 공제조합이 청약시 조합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다.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계약청약서에 자필서명⁽¹⁾을 하지 않은 경우

(1)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공제조합은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조합원에게 돌려드리며, 분담금을 받은 기간에 이자(분담금을 받은 때부터 반환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분담금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7조(공제 안내자료의 효력)

공제조합이 제작·사용한 공제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공제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공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38조(공제기간)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공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공제기간
1. 원 칙	자동차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공제(책임보험을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공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공제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 외 :	분담금을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자동차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기간 이전에 분담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공제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1) "자동차공제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조합원으로 하는 자동차공제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공제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이 공제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39조(사고발생지역)

공제조합은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조합원이 가입한 담보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제40조(청약 철회)

- ① 조합원은 공제계약청약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제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서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계약청약서를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공제조합이 이를 증명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¹⁾가 공제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3. 의무공제에 해당하는 공제계약
 4.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공제계약

(1)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④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분담금을 조합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조합원이 공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공제조합이 제4항의 분담금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41조(청약 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7조(보험계약 체결의 거부)에서 정하는 보험(공제)계약 거절의 사유 이외에 공제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기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42조(계약 전 알릴 의무)

- ① 조합원은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1. 이 공제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공제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2. 이 공제계약을 맺고 있는 자동차(이하 '공제계약자동차'라고 합니다)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차명, 연식, 구조 등 공제계약자동차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성명, 연락처 등 조합원에 관한 사항
 5. 운행지역(도시지역 운행한정 특별약관 적용여부)
 6. 그밖에 공제조합이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분담금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공제조합은 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 조합원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차액 분담금을 더 받고 승인하거나, 제51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43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조합원은 공제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그 사실에 따라 분담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담금을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1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공제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공제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2.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공제계약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항
 3. 공제계약자동차의 차령 만료(차령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의 말일) 등

에 의한 말소 사유가 발생한 사실

4. 공제계약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성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5. 운행지역 변경(선박 등에 승선하여 이동하거나 지정구역 외 또는 육지에서 운행이 필요한 경우)
6. 그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분담금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② 조합원은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조합원이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공제조합이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통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제44조(사고발생 시 의무)

- ① 조합원은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공제조합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공제조합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공제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5. 공제계약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공제조합이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조합이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45조(손실보전 의무)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타 손해보험사 보험가입 등으로 공제규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은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와 기타 손실보전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손실보전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결정된 손실보전금액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46조(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

- ① 조합원이 공제기간 중 공제계약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 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공제조합에 통지하여 공제조합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공제계약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공제계약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조합원으로 한 공제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 ③ 공제조합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공제분담금요율에 따라 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 전의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반환하거나, 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 후의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추가로 청구합니다.
- ④ 공제조합이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조합원이 공제기간 중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 이 공제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새로운 공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제47조(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

- ① 조합원이 공제기간 중에 기존의 공제계약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이 공제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공제조합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공제조합이 승인한 때로부터 이 공제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한 공제계약의 효력은 이 승인이 있는 때에 상실됩니다.

- ② 공제계약자동차를 대체폐차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공제계약이 승계됩니다.
- ③ 공제조합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분담금요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공제계약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조합원에게 돌려드립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산식

$$\text{연간 적용분담금} \times \frac{\text{해당기간}}{365 (\text{윤년} : 366)}$$

- ④ 공제조합이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48조(공제계약의 취소)

공제계약이 조합원 또는 조합원 대리인의 사기 행위에 의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할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49조(공제계약의 효력 상실)

공제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제50조(조합원의 공제계약 해지·해제)

- ① 조합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공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공제는 다음의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제계약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무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공제계약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6조(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 및 제47조(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공제에 대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공제계약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7조(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공제계약이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공제에 대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7조(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공제계약이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공제에 대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에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하여 이 공제계약과 공제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공제가 포함된 다른 공제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은 경우
 6. 공제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해제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② 이 공제계약이 의무공제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공제계약을 맺기 전에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하여 의무공제가 포함된 다른 공제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다른 공제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공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공제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공제계약기간이 개시되는 의무공제가 포함된 새로운 공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공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51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 ① 공제조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지에서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1, 2, 4, 5, 6항에 대한 계약해지는 의무공제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조합원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장 조합원 등의 의무사항 제42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공제계약을 맺은 때에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공제조합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조합원이 공제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공제조합이 이를 승인한 때
다.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부터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라.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을 맺은 날부터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6월이 경과한 때
마. 조합원이 알려야 할 사항이 공제조합이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분담금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2. 조합원이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장 조합원 등의 의무사항 제43조(계약 후 알릴의무) 제1항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부터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나. 조합원이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는 적용분담금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3.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공제조합이 제3장 조합원 등의 의무사항 중 제42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2항, 제43조(계약 후 알릴의무) 제1항 또는 제46조(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 제3항, 제47조(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 제3항 등에 의하여 추가로 분담금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이 그 분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제금 청구에 관하여 조합원, 공제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6. 차령이 초과되어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거나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계약 전,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로 인하여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공제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이를 공제조합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 전,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공제조합은 보상합니다.

■ 제52조(적용분담금의 계산)

자동차공제 분담금은 공제조합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자동차공제 분담금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적용분담금의 계산방법

$$\text{적용 분담금} = \text{기본분담금}^{(1)} \times (\pm \text{범위요율}) \times \text{가입자 특성요율}^{(2)} (\text{공제가입 경력요율}) \times (\text{특약요율}^{(3)} \pm \text{범위요율}) \times \text{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4)} (\text{특별할증요율} \pm \text{조합원별 손해율범위요율}) \times \text{특별요율}^{(5)}$$

- (1) '기본분담금'이라함은 공제계약 체결시 공제분담금요율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분담금 산정시 기본이 되는 분담금
 (2) '가입자특성요율'이라함은 공제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3) '특약요율'이라함은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체결하는 공제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
 (4)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이라함은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5) '특별요율'이라함은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상태가 동종 차종과 상이한 자동차의 특별위험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

■ 제53조(분담금의 환급 등)

- ①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분담금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분담금과 변경 후 분담금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② 공제조합의 고의·과실로 분담금이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조합원이 적정분담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공제조합은 이를 안 날 또는 조합원이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분담금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공제조합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분담금을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 ③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돌려드립니다.
 1. 조합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6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3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전액,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 분담금
 2. 조합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분담금을 뺀 잔액
 3.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공제조합이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분담금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서 '조합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조합원이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공제의 해지는 제외)
 2. 공제조합이 제48조(공제계약의 취소) 및 제51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에 따라 공제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공제계약의 효력 상실
- ⑤ 공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분담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 ⑥ 운휴
 1. 조합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

업·폐업)에 의거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휴업하여 이 공제에 가입한 공제계약자동차의 운행을 중지한 때에는 그 운행중지기간(이하 “운휴기간”이라 합니다)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운휴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분담금을 돌려드립니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2항 위기경보에 의거 경계·심각 단계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하여 7일 이상의 운휴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경계’ 단계에서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2 찬성으로 시행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위기경보 발령일과 같으며 종료일 또한 위기경보가 해제된 날과 같이 합니다.

2. 운휴기간은 관계관청에 휴업신고가 된 날로부터 관계관청에 휴업 종료시 신고가 된 날의 전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관계관청에 휴업 종료신고가 있기 전에 공제조합에 운행재개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접수하기 전날까지로 합니다.
3. 운휴기간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은 관계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운휴기간의 개시일자와 공제계약자동차의 명세를 공제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신고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운휴기간 중에 발생한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운휴기간 중에 공제계약자동차가 운행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공제조합에 통지한 명세상의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⑦ 이 약관에 의해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낸 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⑧ 공제조합이 제7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분담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54조(약관의 해석)

- ① 공제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조합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공제조합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공제조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조합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55조(개인정보이용 및 공제계약 정보의 제공)

-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청구 시 제출서류에 기재된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4조(사고발생시 의무)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및 가해자, 증인의 개인정보를 공제사고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공제조합,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조합원의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와 공제계약자동차의 차량번호, 차대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담보종목, 공제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분담금 할인·할증 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공제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 제56조(공제계약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조합원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제57조(자부담금의 납입)

공제규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결손금이 누적된 때 사고발생 시 일정액의 자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자부담금을 부과 받은 경우 공제조합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58조(추가분담금의 납입)

공제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규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추가분담금을 부과 받은 조합원은 따로 정한 납입기일 안에 추가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59조(분할분담금의 납입)

분담금 분할납입 특별약관에 의거하여 분담금을 분할납입하는 조합원이 분담금의 전액을 납입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이미 지급할 공제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이 이미 받은 분담금의 합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미 납입된 분담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미 납입된 분담금은 사고발생 담보종목의 분담금을 말하며, 다만, 폐차 내지 등록말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60조(미납입분담금의 공제)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 추가분담금, 자부담금, 손실보전금 등이 미납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될 금액 중 미납입분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61조(분쟁의 조정)

이 공제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공제조합과 조합원, 손해배상 청구권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62조(분담금의 할인·할증율)

분담금의 할인·할증율은 『공제분담금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용합니다.

■ 제63조(관할법원)

이 공제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공제조합의 본부 또는 지부 소재지 중 조합원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제6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

가. 사망

각 보장종목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례비	지급액 :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용을 공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다만, 나. (4) 현역병 등 군복무 해당자의 잔여 또는 예정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음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공제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용어풀이> ① '라이프니츠 계수'란 상실수익액을 지급받을 경우, 장래에 대하여 받지 못하는 수익액을 미리 받는 것으로 해당금액의 원금에서 복리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라이프니츠 계수의 월수 계산 시 월미만 일자는 모두 합산하여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만 1개월을 가산합니다.(30일 이하는 미반영)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 간으로 함.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실수익액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 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 경비를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을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실수익액	〈용어풀이〉 ① '주요경비'란 매입비용(재화의 매입, 가공비용, 운반비용 등),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종업원의 급여나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말합니다. ② '기준경비율'이란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이라 함) 등에 적용하는 기준율을 말합니다.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풀이〉 ① 이 공제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공제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실수익액	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공제조합으로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 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가) 현역병 등 군 복무자(급여소득자는 제외)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소득 (단, 병역법에 따른 잔여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나) 현역병 등 군 복무예정자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 (단, 병역법에 따른 예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실수익액	〈용어풀이〉 ① '현역병 등'이라 함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의무소방원·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함 ② '병역법에 따른 잔여 또는 예정 복무기간'이라 함은 현역병은 병역법 제19조에 따른 기간, 의무소방원·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기간,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42조에 따른 기간에 대해 사고발생 일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을 말함. ③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또는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3)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산술평균을 말함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 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거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실수익액	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table> <tr> <th>피해자의 나이</th><th>취업가능월수</th></tr> <tr> <td>62세부터 67세 미만</td><td>36월</td></tr> <tr> <td>67세부터 76세 미만</td><td>24월</td></tr> <tr> <td>76세 이상</td><td>12월</td></tr> </table>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 시기는 19세로 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①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②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frac{1}{1+i} + \frac{1}{(1+i)^2} + \cdots + \frac{1}{(1+i)^n}$ i = 5/12%, n =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frac{1}{1+i} + \frac{1}{(1+i)^2} + \dots + \frac{1}{(1+i)^n}$$

i = 5/12%, n = 취업가능월수

나. 부상

각 보장종목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 급 기 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 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조합원이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항 목	지 급 기 준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공제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table><tr><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r><tr><td>1급</td><td>200</td><td>5급</td><td>75</td><td>9급</td><td>25</td><td>13급</td><td>15</td></tr><tr><td>2급</td><td>176</td><td>6급</td><td>50</td><td>10급</td><td>20</td><td>14급</td><td>15</td></tr><tr><td>3급</td><td>152</td><td>7급</td><td>40</td><td>11급</td><td>20</td><td></td><td></td></tr><tr><td>4급</td><td>128</td><td>8급</td><td>30</td><td>12급</td><td>15</td><td></td><td></td></tr></table>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급	200	5급	75	9급	25	13급	15	2급	176	6급	50	10급	20	14급	15	3급	152	7급	40	11급	20			4급	128	8급	30	12급	15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급	200	5급	75	9급	25	13급	15																																	
	2급	176	6급	50	10급	20	14급	15																																	
3급	152	7급	40	11급	20																																				
4급	128	8급	30	12급	15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공제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공제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산식> $\text{1일 수입감소액} \times \text{휴업일수} \times \frac{85}{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 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항 목	지 급 기 준
3. 휴업손해	(3) 취업가능연한 :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공제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

항 목	지 급 기 준								
4. 간병비	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공제조합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제조합이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공제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상해등급</th><th>인정일수</th></tr> </thead> <tbody> <tr> <td>1급~2급</td><td>60일</td></tr> <tr> <td>3급~4급</td><td>30일</td></tr> <tr> <td>5급</td><td>15일</td></tr> </tbody> </table>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위 1. 내지 4.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 급 기 준																		
1.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¹⁾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¹⁾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¹⁾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¹⁾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 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노동능력상실률</th><th>인정액</th></tr> </thead> <tbody> <tr> <td>45% 이상 50% 미만</td><td>400만원</td></tr> <tr> <td>35% 이상 45% 미만</td><td>240만원</td></tr> <tr> <td>27% 이상 35% 미만</td><td>200만원</td></tr> <tr> <td>20% 이상 27% 미만</td><td>160만원</td></tr> <tr> <td>14% 이상 20% 미만</td><td>120만원</td></tr> <tr> <td>9% 이상 14% 미만</td><td>100만원</td></tr> <tr> <td>5% 이상 9% 미만</td><td>80만원</td></tr> <tr> <td>0% 초과 5% 미만</td><td>50만원</td></tr> </tbody> </table>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만원	35% 이상 45% 미만	240만원	27% 이상 35% 미만	200만원	20% 이상 27% 미만	160만원	14% 이상 20% 미만	120만원	9% 이상 14% 미만	100만원	5% 이상 9% 미만	80만원	0% 초과 5% 미만	50만원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만원																		
35% 이상 45% 미만	240만원																		
27% 이상 35% 미만	200만원																		
20% 이상 27% 미만	160만원																		
14% 이상 20% 미만	120만원																		
9% 이상 14% 미만	100만원																		
5% 이상 9% 미만	80만원																		
0% 초과 5% 미만	50만원																		

항 목	지 급 기 준
1. 위자료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차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식〉 $\text{월평균 현실 소득액} \times \text{노동 능력 상실률} \times \left(\text{노동능력 상실일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text{공제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 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right)$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족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항 목	지 급 기 준
2. 상실수익액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3. 가정간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항 목	지 급 기 준
3. 가정간호비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써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항 목	지 급 기 준
1. 수리비용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¹⁾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²⁾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총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총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2) 내용연수는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2. 교환가액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항 목	지 급 기 준
2. 교환가액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3. 대차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¹⁾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²⁾.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³⁾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¹⁾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뱅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항 목	지 급 기 준
3. 대 차 료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¹⁾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4. 휴 차 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항 목	지 급 기 준
4. 휴 차 료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 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치세 하락손해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격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 금액표

상해등급	공제가입금액	상해등급	공제가입금액
1급	1,500만원	8급	180만원
2급	800만원	9급	140만원
3급	750만원	10급	120만원
4급	700만원	11급	100만원
5급	500만원	12급	60만원
6급	400만원	13급	40만원
7급	250만원	14급	2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금액표

장애등급	공 제 가 입 금 액	
	5,000만원	1억원
1급	5,000만원	1억원
2급	4,500만원	9,000만원
3급	4,000만원	8,000만원
4급	3,500만원	7,000만원
5급	3,000만원	6,000만원
6급	2,500만원	5,000만원
7급	2,000만원	4,000만원
8급	1,500만원	3,000만원
9급	1,200만원	2,400만원
10급	900만원	1,800만원
11급	700만원	1,400만원
12급	500만원	1,000만원
13급	300만원	600만원
14급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분에 의함.

▣ <별표 4> 과실상계 등

항 목	지 급 기 준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 I」에서 사망공제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 공제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 II」에서 사망공제금, 부상공제금 및 후유장애공제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공제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공제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조합원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가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자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 ⁽¹⁾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 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28조 2항 및 제32조 제5항 관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공제금의 한도금액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1급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 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추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추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000 만원	3,000 만원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2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통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00 만원	1,500 만원
3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	1,000 만원	1,200 만원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3급	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000 만원	1,200 만원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3급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00 만원	1,200 만원
4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 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 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 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 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 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 을 시행한 상해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 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izzi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00 만원	1,000 만원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4급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 행한 상해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 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 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과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 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00 만원	1,000 만원
5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 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 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 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900 만원	900 만원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5급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900 만원	900 만원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포방 관절을 말한다)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5급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00 만원	900 만원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500 만원	700 만원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티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6급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00 만원	700 만원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6급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00 만원	700 만원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500 만원	500 만원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 · 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7급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 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 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00 만원	500 만원
8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 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 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 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0 만원	300 만원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8급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 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 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40 만원	300 만원
9급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240 만원	240 만원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9급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0 만원	240 만원
	9.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160 만원	200 만원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손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10급	않은 상해	160 만원	200 만원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 뇌진탕	160 만원	160 만원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 또는 수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80 만원	120 만원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13급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홍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홍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0 만원	80 만원
14급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0 만원	50 만원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 용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파편술, 유경 파편술, 원거리 파편술, 국소 파편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두부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혈액농중,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영역		내용
두부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흉·복부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hythmia 또는 ST 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추손상으로 본다.
상·하지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역		내용
상·하지	공통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더.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러.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머.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영역	내용
상·하지	상지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하지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공제금의 한도금액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장애 급별	신 체 장 애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 억원	1억 5,000 만원
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9,000 만원	1억 3,500 만원
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8,000 만원	1억 2,000 만원

장애 급별	신 체 장 애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3급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8,000 만원	1억 2,000 만원
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000 만원	1억 500 만원
5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000 만원	9,000 만원
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5,000 만원	7,500 만원

장애 급별	신 체 장 애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6급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5,000 만원	7,500 만원
7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4,000 만원	6,000 만원

장애 급별	신 체 장 애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7급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4,000 만원	6,000 만원
8급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3,000 만원	4,500 만원
9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아합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2,250 만원	3,800 만원

장애 급별	신 체 장 애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9급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2,250 만원	3,800 만원
10급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	1,880 만원	2,700 만원

장애 급별	신 체 장 애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10급	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880 만원	2,700 만원
11급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500 만원	2,300 만원

장애 급별	신 체 장 애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12급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250 만원	1,900 만원
13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1,000 만원	1,500 만원

장애 급별	신 체 장 애	한도금액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적용
13급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00 만원	1,500 만원
14급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630 만원	1,000 만원

비 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률상 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麻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분담금 납입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도서지역에서 운행하는 공제계약 자동차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약관

제1편 분담금 납입방법

제2편 의무공제 일시담보

제3편 운행지역 한정

제1편 분담금 납입방법

제1장 분담금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분담금의 분할납입)	115
제2조(분할분담금의 납입방법)	115
제3조(분할분담금의 어음수납)	115
제4조(분할분담금의 납입최고)	115
제5조(분담금의 환급)	116
제6조(공제계약의 부활)	116
제7조(준용규정)	116

제2장 신용카드이용 분담금 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책임내용)	117
제2조(분담금의 영수일시)	117
제3조(사고난 신용카드 계약)	117
제4조(준용규정)	117

제2편 의무공제 일시담보

제1장 의무공제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118
제2조(조합원)	118
제3조(보상책임내용)	118
제4조(분담금의 청구 및 납입)	119
제5조(준용규정)	119

제3편 운행지역 한정

제1장 도서지역 운행한정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120
제2조(조합원)	120
제3조(조합원 등의 의무사항)	120
제4조(보상책임내용)	120
제5조(준용규정)	121



제1편 분담금 납입방법

제1장 분담금 분할납입 특별약관

■ 제1조(분담금의 분할납입)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조합원이 분담금(이 공제계약의 공제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공제계약청약서 기재의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분담금”이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분할분담금의 납입방법)

조합원은 이 공제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분담금을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분담금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3조(분할분담금의 어음수납)

조합원이 이 공제계약을 맺으면서 분담금을 현금과 은행도 어음으로 납입한 경우, 어음은 현금기간이 끝나는 전일까지 결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현금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공제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제4조(분할분담금의 납입최고)

① 조합원이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 최고기간을 둡니다. 조합은 이 납입 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납입 최고기간 안에 분할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공제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조합원이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은 조합원에게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조합원이 보통약관 제3장 조합원 등의 의무 사항 제43조(계약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공제 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를 조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 제5조(분담금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4조(분할분담금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조합이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분담금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분담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 제6조(공제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4조(분할분담금의 납입최고)에 의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조합원이 공제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분담금을 납입한 때에는 이 공제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분담금을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제1조(보상책임내용)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소속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카드회원을 조합원으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분담금의 영수일시)

조합은 신용카드이용 분담금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조합원이 소속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신용카드로써 전액 분담금 또는 제1회 분담금을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분담금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제3조(사고 난 신용카드 계약)

사고 난 신용카드⁽¹⁾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공제계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1) '사고 난 신용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편 의무공제 일시담보

제1장 의무공제 일시담보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1절(대인배상Ⅰ) 제2절(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 제2조(조합원)

공제조합은 보통약관 제46조(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계약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및 제2절의 공제계약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 제3조(보상책임내용)

①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및 제2절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Ⅱ의 경우 공제조합이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공제금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한도로 하며, 대물배상의 경우 공제조합이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공제금은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양도된 공제계약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2. 양도된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3. 보통약관 제38조(공제기간)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공제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③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이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공제분담금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율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 제4조(분담금의 청구 및 납입)

① 조합은 이 특별약관 제3조(보상책임내용)에 의해 조합이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분담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양수인은 제1항의 분담금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편 운행지역 한정

제1장 도서지역 운행한정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교량이나 선박을 이용하여 육지와 이동이 전혀 없이 도서지역⁽¹⁾ 내에서만 운행하는 전세버스차량으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차량에 한합니다.

(1) ‘도서지역’이라 함은 육지와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으로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운행하여 육지와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 제2조(조합원)

이 약관에서 정하는 지역 내에 주사무소(본사)를 두거나 영업소를 두고 해당 지역 내에서만 운행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이 약관에 의한 공제 가입한 자를 말하며, 조합원의 범위는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조합원과 동일합니다.

□ 제3조(조합원 등의 의무사항)

조합원은 공제계약을 맺을 때 보통약관 제3장 조합원 등의 의무사항 제42조(계약 전 알릴의무)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합에 알려야 하며, 공제계약후에도 보통약관 제3장 조합원 등의 의무사항 제43조(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운행지역을 변경(선박 등에 승선하여 이동하거나 지정구역외 또는 육지에서 운행이 필요한 경우)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조합에 알려 운행지역 변경에 따른 부담금을 더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등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4조(보상책임내용)

①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공제계약자동차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도서지역 내에서만 운행하는 전세버스차량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지역 내

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공제조합은 제1조(적용대상) 및 제3조(조합원 등의 의무사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된 구역 이외에서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부 칙

1. (시행일)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공제약관 보통약관 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액표의 적용은 2011년 3월1일 책임개시 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약관은 2016년 5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아래사항은 해당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책임보험금 등)이 2016.4.1일자로 한도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이 보통약관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공제금의 한도금액』과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공제금의 한도금액』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2016.4.1일 이전, 이후 사고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 자배법 시행령 제3조 개정일자 : 2014.12.30, 시행일자 : 2016.4.1일 이후 사고발생부터

3. (대물배상 수리비 지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1.수리비용, 2.교환가액, 3.대차료』는 2014년 10월 15일 이후 사고발생부터 적용한다.

4.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공제금 지급기준 성년기준연령에 대한 경과조치)『보통약관 별표1 대인배상 지급기준 가.사망의 2.위자료, 3.상실수익액과 다.후유장애의 1.위자료』는 2014년 10월 15일 이후 사고발생부터 적용한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자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보통약관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자부담금)』은 2015년 4월 9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3월 1일 이후 책임개시계약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5월 1일 이후 책임개시계약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책임개시계약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약관은 2020년 11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아래사항은 해당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시행(2020.10.22.)으로 음주사고 부담금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적용한다.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08.12.)으로 농어업인 취업 가능연한 조정은 2020년 08월 12일 사고 발생 건부터 적용한다.

■ 공제조합 본부 및 지부

본/지부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303, 국도푸르미르 5층	02-794-0561	02-794-0535	28166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11층 (신천동, 교통회관)	업무 02-423-2530 보상 02-420-5922	02-3275-8918 02-3275-8901	05510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27, 1801호 (부전동, 유원오피스텔)	051-818-5333	051-805-5354	47257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2층 (자신동, 교통연수원)	053-768-8595	053-765-8505	42183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화대로 165번길 29(옥련동)	032-461-8058	032-461-8054	21946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우로450, 3층(마북동)	062-523-7282	062-528-7280	61955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25, 3층(용두동, 혁명빌딩)	042-253-8833	042-253-8834	34856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2가번길 10, 2층(신정동, 월봉빌딩)	052-257-6243	052-257-6247	44670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233번길 90, 1, 2층 (조원동)	업무 031-291-6060 보상 031-297-4972	031-291-6063 031-295-8572	16293
강원	강원도 춘천시 신흥길 5번길 5, 3층	033-242-8210	033-242-8212	24237
충북	충북 청주시 서원구 예제로112, 5층 (사직동, KT서청주지사)	043-258-9722	043-258-9726	28565
충남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83(금충동, 충남 교통연수원 내)	041-881-9344	041-881-9348	32589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1길 24(효자동 3가)	063-271-4914	063-276-5222	54956
전남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 136, 2층(신기리)	061-371-4982	061-371-4983	58114
경북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30길 103, 5층 (신천동, 경전빌딩)	053-742-7753	053-742-7853	41252
경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5, 3층 (창동, 창동오피스텔)	055-252-0541	055-252-0544	5128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동13길 48, 2층(도남동)	064-724-4571	064-711-4509	63235

■ 사업소 / 출장소

사업소/출장소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경기북부사업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39번길 45 5층(의정부동, 재경빌딩)	031-855-6282	031-872-0774	11650
강릉출장소	강원도 강릉시 새냉이길 36 1층(홍제동)	033-641-8235	033-641-8236	25525



**전세버스 사고접수
현장출동(휴일·야간)**

1588-3080

※ 계약관련사항은 해당 지부로 문의 바랍니다.

전세버스공제조합 : <https://nmcb.org>